

동두천시자유수호평화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

의 안 번 호	3-376
--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02. 2. .

제 출 자 : 동두천시장

1. 제안이유

자유수호평화박물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박물관의 휴관일을 매년 1월1일과 설날 · 추석 및 월요일등으로 정함(안 제3조)

나. 박물관의 관람 시간과 매표시간을 정함(안 제4조).

다. 박물관의 관람료를 정함(안 제5조).

라. 박물관의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를 국민, 외국 사절단,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장애인등으로 규정함(안 제6조).

마. 박물관의 전시실 안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0조)

바. 박물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4조)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동두천시자유수호평화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동두천시자유수호평화박물관(이하 “박물관”이라 한다)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“어린이”라 함은 만 7세이상 만 12세이하의 자와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
2. “청소년”이라 함은 만 13세이상 만 19세미만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·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말한다
3. “군인”이라 함은 정복을 착용한 군인(전투경찰, 의무경찰, 경비교도대원,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)
4. “어른”이라 함은 만 19세이상 만 6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
5. “단체”라 함은 30명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인 자를 말한다

제3조 (개관 및 휴관) ①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, 그 전시품은 일반공중에게 공개한다.

②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1월 1일

2. 설날 및 추석
3. 월요일(월요일이 휴일일 경우에는 그 익일)
4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

③자유수호평화박물관장(이하 "관장"이라 한다)은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.

제4조 (관람 및 매표시간) ①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
2.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

②박물관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.

③관장은 국민 또는 외국사절단의 관람등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관람시간과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5조 (관람료) ①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이미 징수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. 다만, 관장이 반환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6조 (무료관람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
1. 국민 및 그 수행자
2.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
3.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4.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5.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
6. 6.25전쟁 참전 16개국과 의료지원 5개국의 참전용사 및 그 가족
7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
8. 만6세 이하의 자와 만65세 이상의 자
9. 기타 관장이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
제7조 (관람권) ①관람권은 어른, 청소년·군인, 어린이 및 어른단체, 청소년·군인단체, 어린이단체로 구분한다.

②관람권에는 종류별로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박물관 검인을 날인하여야 하며, 이를 소정의 관람권검인부에 기재하여야 한다.

③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과 관람권검인부의 서식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8조 (매표 및 수표) ①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박물관 입구의 매표소에서 판매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표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와 제6조제1호 내지 제8호에 의한 무료관람 대상자를 게시하여야 한다.

③수표원은 관람자가 입장 할 때에는 관람권의 점선부분을 절취하여 회수하고, 잔여부분은 관람자에게 수교하여야 한다.

제9조 (관람의 금지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.

1. 술에 만취한 자
2.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6세 이하의 자
3. 다량의 물품을 소지한 자
4.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

제10조 (행위의 제한) ①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1. 흡연을 하는 행위
2.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 (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한한다)을 하는 행위
3.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
4. 고성, 난무하는 행위
5.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

②관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람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.

제11조 (변상조치)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박물관의 시설 및 전시품을 파손·오손·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

제12조 (수장품 구입) 관장이 박물관에 수장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을 거쳐 구입하여야 한다. 다만, 50만원 이하의 물품은 관장이 평가하여 구입할 수 있다.

제13조 (수장품의 관리) 수장품은 반드시 자료대장과 자료카드등에 기록 관리

유지한다.

제14조 (운영위원회) ①박물관에는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 및 자료수집, 전시 등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박물관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

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으로 한다.

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, 위원은 역사 및 문화에 지식과 덕망이 높은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④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

⑤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시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 동수일 경우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⑥간사는 관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⑦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.

1.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
2.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
3. 박물관 운영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

⑧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시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동두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5조 (위탁관리) 박물관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

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6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박물관의 개관과 동시에 시행한다.

[별표]

자유수호평화박물관 관람료

(단위 : 원)

구 분	어 른	청소년·군인	어린이
개 인	1,000	500	400
단 체	800	400	300

※문예진흥기금 포함